

議案番號	第288號
議決年月日	1995. 7. 31. (第35回)

議決事項	수경 기결
------	----------



固城郡發展推進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7. 15.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제출년월일 : 1995. 7. 15.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고성군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관계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성군 발전 주요현안 및 재정확충 방안등에 대한 조사·연구(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안 제7조)

다. 자체기금이 확보될때까지 운영비 군에서 지원(안 제8조)

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근무(안 제9조)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고성군청내에 둔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 발전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2. 군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의 감사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2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군실과사업소장 및 각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지드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7조(기금) ①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기금은 군 및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운영비) 군은 위원회의 자체 운영기금이 확보될때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속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조례에 정한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2조(수당지급등) ①위원회의 직원수당과 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비는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비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수당 및 연구비 지급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